



월간 뉴스레터

Smart decisions. Lasting value

Monthly Newsletter of Hanul Choongjung LLC

2018년 1월호

Contents

회계정보

- 2017년 결산시 회계 관련 유의사항 안내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위반 유의
- 2018년도 테마감리분야 사전예고

세무 및 법률정보

-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 최신 세무예규 · 판례
- 4대보험 및 기타법률 개정 사항

한울회계법인 업무소개

- 감사, 인증 및 관련 재무자문
- 세무신고/세무자문/세무불복
- 국제조세/이전가격
- 기업관리업무 서비스(BPO)
- 지역 및 관광개발컨설팅
- 전략/인사/리스크 /관리회계/마케팅/신사업전략 등
- SOC 컨설팅
- 기업금융/구조조정/M&A/Transaction Service

[한울회계법인은 매출액기준 업계 7위 규모이며, Global Top 8 회계 네트워크의 하나인 Crowe Horwath International의 한국 Member Firm입니다.]

한울회계법인 Hanul Choongjung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레터 관련 연락처]

▶ 연락처

한울회계법인
Hanul Choongjung LLC
 Member Crowe Horwath International

전화번호 : 02-316-6646(교환 316-6600) - 팩스번호 : 02-775-5885
 이메일 주소 : secretary@crowehorwath.co.kr
 Website : www.crowehorwath.co.kr

▶ 사무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3층, 5~8층, 10층 (우 : 06179)

ABAS 본부
02 - 316 - 6621

회계정보 등

2017년 결산시 회계 관련 유의사항 안내

금감원 [2017.12.29]

2017년 결산시
회계관련 유의사항
개요

1. 개요

□ 금융감독원은 2017년 결산을 앞두고 회사 및 외부감사인이 결산·사업보고서 공시·외부감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였습니다.
【기대효과】 회사의 2017 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시 오류를 최소화하여 재무공시 충실화에 기여함

2. 주요내용

가. 회사의 책임하에 재무제표 직접 작성

회사의 책임하에
재무제표 직접 작성

◆ 회사는 자기책임 하에 스스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감사前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을 명시하고 회사가 외부감사시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감사前 재무제표의 증권선물위원회 동시 제출(*)을 의무화

(*) 증선위 위탁으로 거래소(상장법인) 및 금감원(비상장법인)의 공시시스템에 제출

-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외부감사인에게 의존하는 잘못된 관행은 외부감사를 통한 회계 오류 검증기능을 약화시켜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
- 참고로, 금번 전부개정('17.10.31.공포) 외감법에서는 감사인의 대리작성 및 회계처리 자문행위 금지의무 뿐만 아니라, 회사의 요구행위를 금지하여 회사의 재무제표 직접작성 의무를 더욱 강화('18.11.1.시행 예정)

구분	세부 내용		
제출대상	▪주권상장법인 및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제출서류	①재무상태표, ②(포괄)손익계산서, ③자본변동표, ④현금흐름표, ⑤주식 *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연결기준 ①~⑤를 동일하게 제출		
제출처	▪상장법인 : 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 비상장법인 : 금감원 닷트 접수시스템		
제출시점	▪외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연결포함)를 제출할 때		
	구분	별도(개별) 재무제표	연결 재무제표* (K-IFRS 적용 회사)
	일반법인	정기주주총회일 6주전	정기주주총회일 4주전
	회생절차진행법인	사업연도 종료일 후 45일	사업연도 종료일 후 60일
※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회사는 사업연도 종료후 90일 이내 제출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 회사는 70일 이내 제출)			

[유의사항]

(회사) 회사가 직접 작성한 감사前 재무제표 전부(주석 포함)를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외부감사인과 금감원(거래소)에 동시 제출

①(제출서류)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등 연결 및 개별재무제표 전부의 내용

②(제출기한) 감사인에게 제출할 때 금감원(거래소)*에 동시 제출

* 상장법인 :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KIND)

비상장법인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접수시스템(DART)

◦상장법인의 경우, 별도(개별)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6주전까지, 연결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4주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③(기타사항) 백지(공란) 또는 전기(또는 분반기) 재무제표를 그대로 제출한 경우 허위로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전부 또는 일부 미제출로 간주되며,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회사가 조치받은 날로부터 최근 2년내 재위반한 경우에는 가중조치될 수 있음을 주의

(외부감사인) 외부감사 회사에 대하여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거나 자문하는 행위 금지

나. 수주산업 핵심감사항목에 대한 충실기재

◆ 수주산업 회사의 외부감사인은, 핵심감사항목별 회사의 현황과 감사절차에 대해 양적·질적으로 충실하게 기재해야 할 필요

□ 외감법 적용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중, 진행기준(투입법(*1))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수주산업(*2)에 속하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은

(*1) 총투입예정원가 대비 투입원가 기준으로 진행률을 측정하고 그 진행률에 따라 공사수익을 인식하는 방법

(*2) 건설업, 조선업 등 특정 산업에 속하는 기업에 한정되지 않으며, 진행기준(투입법)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종속회사를 연결하는 지배회사도 포함

◦ 회계감사 실무지침(*)에 따라,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핵심감사항목을 선정하고 선정이유와 항목별 감사절차 및 감사결과 등을 감사보고서에 충실히 기술해야 함

(*) 회계감사 실무지침 2016-1 “수주산업 감사시 특별 고려사항에 대한 실무지침” (‘16.1.11.)

□ 금감원이 2016년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핵심감사항목의 기재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일반적인 내용 위주로 기재

<2016년 사업보고서 핵심감사제도 점검기준 및 결과>

점검기준	점검결과
핵심감사항목 식별의 충분성	대체로 양호
식별사유의 질적 구체성	대부분 식별사유를 특정하지 않아 미흡
식별사유의 양적 구체성	대체로 양호하나 구체적 분석 미흡
감사절차의 충분성	대체로 양호
감사절차의 적합성	증거력이 강한 절차 수행 미흡

[유의사항]

(회사·외부감사인) 수주산업 영위 회사 지배기구와 외부감사인은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핵심감사항목을 선정

(외부감사인) 감사실무지침에 따라, 핵심감사항목을 선정하고 감사절차 및 결과 등을 감사보고서에 충실하게 기재

수주산업
핵심감사항목에
대한 충실기재

누락하기 쉬운
우발부채
주석공시 철저

다. 누락하기 쉬운 우발부채 주석공시 철저

◆ 우발부채에 대한 주석 공시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누락하기 쉬운 우발부채 유형에 유의할 필요

- 최근 건설회사 등이 다양한 방식으로 신용보강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주석 공시를 누락하는 사례는,
 -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 저하 및 투자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 간과하기 쉬운 우발부채의 다양한 유형에 유의하여 우발부채에 대한 주석 공시를 충분히 할 필요

[유의사항]

(회사·외부감사인) 아래 예시를 포함하여 누락하기 쉬운 우발부채 유형에 유의하여 우발부채 주석 공시를 충분히 할 필요

- ① 건설회사가 다양한 방식으로 신용보강을 제공
 - ◇ 연대보증, 채무인수, 책임준공, 자금보충, 조건부 채무인수 등(*)
 - (*) (K-IFRS 제1037호 문단86)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그 우발부채의 특성, 재무적 영향의 추정 금액, 자원의 유출 금액 또는 시기와 관련된 불확실성 정도 등을 공시
- ② Rating Trigger 조항으로 인한 기한의 이익 상실가능성
 - ◇ 신용등급의 하락으로 인해 부채의 기한이익상실 가능성이 있는 경우, 유동성 위험 공시 및 우발부채 공시 규정을 함께 고려
- ③ 계약 해제시 우발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계약
 - ◇ 계약 해제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계약의 경우, 우발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계약내용을 주석에 공시할 필요

도입예정 기준서
관련 주석공시
철저

라. 도입예정 기준서(금융상품, 수익인식, 리스)관련 주석 공시 철저

◆ 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및 제1116호 리스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

- 2017년 말 현재 제정·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및 제1116호 리스와 관련하여,
 - (1) 아직 적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과
 - (2) 최초로 적용되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 목적적합한정보를 공시(*)해야 함(K-IFRS 1008.30)
 - (*) 이미 알고 있거나(known)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reasonably estimable) 정보를 공시하되, 아래 항목의 공시를 고려함(K-IFRS 1008.31)
 - (1) 새로운 K-IFRS 명칭
 - (2) 새로운 K-IFRS 제정에 따른 회계정책 변경의 성격
 - (3) 새로운 K-IFRS 의무 적용일
 - (4) 새로운 K-IFRS 최초 적용 예정일
 - (5) 다음 중 어느 하나
 - ㉠ 새로운 K-IFRS 최초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에 관한 내용
 - ㉡ 그러한 영향을 알 수 없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 그러한 내용에 관한 기술

[유의사항]

(회사·외부감사인) 새로운 기준서 도입 준비 상황과 도입 시 주요 재무적 영향 정보를 충실히 작성·감사 할 필요

테마감리대상
회계이슈
검토 강화

마. 테마감리대상 회계이슈 검토 강화

◆ 회사는 금감원의 '18년 테마감리 대상 4가지 회계이슈를 확인하고, 회계처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

향후 계획
3. 향후 계획

- 동 유의사항을 유관기관* 등을 통하여 기업·회계사 등에 안내하고,
 - * 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공인회계사회 등
 - 2018년 회계감독 및 감리업무 수행시 금번 안내사항의 충실한 이행여부 등을 반드시 점검할 계획
- [금감원 홈페이지 보도자료 2017.12.29] (<http://www.fss.or.kr>)

**내부회계제도 관련
법규 위반 유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위반 유의
[금감원 2017.12.26]
배경
1. 배경

- 상장회사 등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많은 회사들의 위반이 있었고, 그 중에는 관련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위반한 회사들도 다수 있었는 바
 - 금융감독원은 2017년 결산을 앞두고 회사 및 외부감사인의 관련 법규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였습니다.
 - (*)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되도록 하는 내부통제 제도의 일환임
-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대상회사>

구 분	'15 년	'16 년	'17 년(예정)
주권상장법인	2,009사	2,099사	2,159사*
자산총액 1,000억원이상 상장법인	2,207사	2,735사	2,961사
계	4,216사	4,834사	5,120사

* 2017.12.7.기준 주권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개요]

- (적용대상) 외부감사 대상회사 중 ①주권상장법인과 ②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
- (준수의무)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관리규정과 관리·운영조직)를 구축하고, 사업연도마다 그 운영실태 및 평가결과를 이사회 등에 보고하여야 함
- 대상회사의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를 검토하고 검토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여야 함

주요 유의사항
2. 주요 유의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회사와 감사인은 법규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들을 특히 유의하여야 함

가. 회사

- (적용대상 여부를 확인) 외부감사 대상회사 중 ① 주권상장법인과 ②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0억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임

[오인하기 쉬운 사례]

- 당해연도 중에 상장한 회사도 적용대상임
- 직전사업연도말 일시적으로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회사가 당해연도말 1,000억원 미만이 되어도 적용대상임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대상회사도 제도적용이 면제되지 않음
-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였음에도 내부회계관리자가 운영실태를 보고하지 않거나 회사의 감사가 운영실태를 평가하지 않는 경우 등은 내부회계관리자, 감사가 과태료 부과대상임
- (감사인지정 조치도 부과) '15회계연도부터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대상회사에 대하여는 감사인지정 조치를 하고 있고 대상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지 않는 등 법규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함께 부과

□ (내부회계관리제도 변경내용과 시행시기 유의) '17.10월 외감법 전면개정으로 '18.11월부터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해 현행과 같은 내부회계관리자가 아닌, 대표자가 직접 사업연도마다 회사의 이사회·감사 및 주주총회에 보고해야하고 위반시에는 대표자도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대상이 됨

□ (일정규모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은 사전준비 철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은 2019년 감사보고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인의 인증수준이 현행의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되므로(*) 대상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운영함에 있어 사전에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은 2020년 감사보고서부터 적용

*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은 2022년 감사보고서부터 적용

* 2023년 감사보고서부터는 전체 주권상장법인에 적용

나. 감사인

□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은 감사의견과는 별개) 외부 감사인은 감사의견과 별도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 표명의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함

◦ 따라서 감사의견을 의견거절하거나 비적정의견을 표명하는 경우라도 감사보고서에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별도로 표명해야 함

3. 향후 계획

□ ('17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전수조사 실시)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관련제도 정착을 위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엄중조치할 계획임

[금감원 홈페이지 보도자료 2017.12.26] (<http://www.fss.or.kr>)

2018년도 테마감리
분야 사전 예고

2018년도 테마감리분야 사전 예고

[금감원 2017.12.18]

□ 금융감독원은 최근 발생한 회계의혹, 감리지적결과,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18년 테마감리시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로 ① 개발비 인식·평가의 적정성, ② 국외 매출 회계처리의 적정성, ③ 사업결합 회계처리의 적정성, ④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의 적정성을 선정하였음.

□ 회계오류 방지를 위해 기업들은 '17년도 재무제표 작성시 테마감리 회계이슈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결산에 신중을 기할 필요

[금감원 홈페이지 보도자료 2017.12.26] (<http://www.fss.or.kr>)

세무자문본부
02 - 316 - 6621
세무 및 법률정보 등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 기획재정부는 2018. 1.8(월)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안을 발표했습니다. 동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1.8. ~ 1.29),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18년 2월 초순경에 공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세법

□ 양도소득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소득령 §157①·②, §167의8①)

< 개정이유 > 소득 간 과세형평 제고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input type="radio"/> 유가증권시장 - ('18.4월)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5억원 이상 - ('20.4월)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 <신 설> <input type="radio"/> 코스닥시장 - ('18.4월) 지분율 2% 또는 종목별 보유액 15억원 이상 - ('20.4월) 지분율 2%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 <신 설> <input type="radio"/> 코넥스시장 - 지분율 4%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 <input type="checkbox"/>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 중소기업 주식 양도시 우대세율 (10%) 미적용 - ('18.4월) 지분율 4% 또는 종목별 보유액 15억원 이상 - ('20.4월) 지분율 4%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 <신 설>	<input type="checkbox"/>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 <input type="radio"/> 유가증권시장 (좌 동) - ('21.4월)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 <input type="radio"/> 코스닥시장 (좌 동) - ('21.4월) 지분율 2%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 <input type="radio"/> 코넥스시장 - ('21.4월) 지분율 4%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 <input type="checkbox"/>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 (좌 동) ('21.4월) 지분율 4%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

거주자 판정 기준 합리화(소득령 §4③)

< 개정이유 > 재외동포의 국내 투자 촉진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거주자 요건 <input type="radio"/>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input type="radio"/> 2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input type="checkbox"/> 거주자 판정 기준 합리화 <input type="radio"/> (좌 동) <input type="radio"/>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소득령 §179⑩, 법인령 §132⑧)

 < 개정이유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 강화
 < 적용시기 > '18.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주식양도소득 과세 범위 <input type="radio"/> 비상장 주식 : 모두 과세 <input type="radio"/> 상장 주식 - 장외 거래 : 모두 과세 - 장내 거래 : 대주주 과세 ▪ 대주주 범위 : 25% 이상	<input type="checkbox"/>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상장주식 과세 범위 확대 <input type="radio"/> (좌 동) <input type="radio"/> 상장 주식 - (좌 동) - 대주주 범위 확대 ▪ 25% → 5% 이상

 강의료 등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 조정(소득령 §89)

< 개정이유 > 사업소득과의 과세형평성 제고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기타소득의 소득금액 계산시 원고료, 강의료, 자문료 등은 80%의 필요경비율을 적용	<input type="checkbox"/> 필요경비율을 동종 사업소득의 단순경비율(60%)수준으로 단계적 축소 조정 ('18. 4월~12월 : 70% '19 이후 : 60%)

2. 법인세법

- 업무용승용차의 임직원전용보험 가입 의무화 개선(법인령 §50의2㉔)

< 개정이유 > 제도 합리화 및 제도 도입 초기의 납세자 부담 완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 금액 (손금산입금액) ○ 해당 사업연도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 가입일수 비율에 의하여 손금인정 - 다만, '16.1.1일 이후 개시하는 최초 사업연도 1회에 한함	-'17.1.1일 이후에도 계속 적용

-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의 범위(법인령 §23)

< 개정이유 > 손해배상금 관련 비용의 손금인정 합리화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손해배상금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대상 및 손금불산입액 ○ (대 상) 다음 규정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손해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 「개인정보보호법」 §39③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3②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5②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4②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7의2② - 「기간제 및 단기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②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1③ - 「제조물 책임법」 §3②('18.4월 시행) ○ (손금불산입액)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배상금 - 다만, 실손해액이 불분명한 경우는 손해배상금의 2/3

3.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 물납요건 강화(상증령 §73)

< 개정이유 > 비상장주식 등 물납요건 강화

< 적용시기 > '18.4.1. 이후 물납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물납 한도 ○ 물납에 총당할 수 있는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 세액* *상속세 납부세액 X (부동산+유가증권 가액) / 총상속재산가액 <input type="checkbox"/> 비상장주식 물납요건 ○ 비상장주식 외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물납에 총당할 수 있는 선 순위 물납재산*을 물납에 총당해도 부족한 경우 *국·공채, 상장주식(처분이 제한된 경우), 부동산 <추 가>	<input type="checkbox"/> 물납 한도 축소 ○ 물납한도 = MIN [①,②] ① 현행 물납한도 ② 상속세 납부세액 중 현금화가 용이한 금융재산(금융부채 차 감)과 상장주식 등 상장유가증 권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상속세 납부세액 - 순금융재산 가액 - 상장유가증권 가액(처 분제한 주식등은 제외) <input type="checkbox"/> 비상장주식 물납요건 강화 ○ (좌 등) ○ 상속세액이 비상장주식 등*을 제외한 상속세 과세가액 보다 큰 경우 그 차액**에 한해 비상 장주식 물납 허용 * 비상장주식 및 상속받은 주택 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 인이 거주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 가액 ** 상속세 납부세액 - 비상장주 식 등을 제외한 상속세 과세가 액

 상속세 및 증여세 결정기한 연장(상증령 §78)

< 개정이유 > 상속·증여세 결정기한 합리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상속·증여세 결정기한 ○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6월 ○ 증여세: 신고기한부터 3월	<input type="checkbox"/> 결정기한 3개월 연장 ○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월 ○ 증여세: 신고기한부터 6월

4.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과태료 인상(국조령 §51①)

< 개정이유 > 다국적기업 국제거래 관련정보 파악의 실효성 제고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를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input type="checkbox"/> 국제거래명세서 전부 또는 일부를 미제출·거짓제출시 : 국외특수관계인별 500만원 <input type="checkbox"/>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제출·거짓제출시 : 보고서별 1천만원 - 개별기업보고서 - 통합기업보고서 - 국가별보고서	<input type="checkbox"/> 과태료 인상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1천만원 → 3천만원

최신 세무예규 · 판례
최신 세무예규 판례

- 법정증빙명세서미수취 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금액에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2017두58717, 2017.12.7.)
 -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마)목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영수증의 경우 명문으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은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는 국세청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실무상으로는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한 사례가 상당수 있는 등 그 기준이 통일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 즉 공급가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함.
-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25%이상을 보유한 일본거주자가 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지분율이 25%이하가 된 경우 한일조세조약상 적용받을 수 있는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1936, 2017.11.28.)
 -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5% 제한세율은 수익이 발생하는 기간 종료일을 주식 소유기간의 범위에 넣음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기간동안 외국법인의 지속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그 기간 안에서 배당이 발생하면 그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을 5%로 제한하여 과세함으로써 해외투자를 촉진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그러므로 이 사건처럼 주식소각을 통한 의제배당을 그 수익이 발생하는 기간 내에 함으로써 그 기간 종료일 전에 해당 법인이 투자금을 회수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기간 종료일에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5%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

4대보험 및 기타법률 개정사항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인상

2018년 1월부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되었습니다.

구분	2017년	2018년
건강보험료율	6.12%	6.24%
장기요양보험료율	6.55%	7.38%

출산전후휴가급여 인상

2018년 1월부터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아래와 같이 인상되었습니다.

구분	2017년	2018년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사산 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480만원(2017년:4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50만원	480만원
한번에 둘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 1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640만원(2017년: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00만원	640만원

육아휴직시 연차휴가 보장

기존에는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할 적에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들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2018년 5월 28일 시행예정).

신입사원 연차휴가 부여

종전에는 근무기간 1년 미만인 신입사원의 경우 한달 만근 시 1일의 휴가가 부여되어 그 사용한 휴가일수는 다음연도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되었으나, 2018년부터는 신입사원도 입사 1년차에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고 2년차부터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2018년 5월 28일 시행예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18년 1월 1일부터 개정, 적용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규칙에 따르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최소 적립금 수준이 아래와 같이 인상됩니다.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 100분의 80
2019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 100분의 90
2021년 1월 1일 이후	: 100분의 10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2018년 1월 1일부터 통상임금의 80%(종전: 60%)를 지원받게 됩니다(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 추가

2018년부터 산재보험료율은 기존의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에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을(2018년: 1.5/1,000로 고시) -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함-을 가산한 요율로 결정됩니다.

외환거래법상 채권회수의무 삭제

2017년 7월 18일자로 개정, 시행된 외국환거래관리규정에 따르면 종전의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계약건당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는 채권은 해당 채권의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로부터 3년이내에 이를 국내로 회수하여야 하는 의무가 삭제되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시행령 개정

부정청탁금지법시행령 일부가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2018년 1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구분		기존	변경
가액 범위	음식물	3만원	동일
	선물	5만원	5만원 (농수산물·가공품 10만원)
	경조사비	10만원	5만원 (화환·조화 10만원)
선물 범위		상품권 등 유가증권 포함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
외부강의 등 상한액	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직급별 구분 있음 (시간당 20~50만원)	직급별 구분 없음 (시간당 40만원)
	국립학교 교직원	공무원과 동일 (시간당 20~50만원)	시립학교 교직원과 동일 (시간당 100만원)
	공직유관단체인 언론사 임직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동일 (시간당 20~40만원)	일반 언론사 임직원과 동일 (시간당 100만원)
외부강의 등 보완 신고기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제출		매년	신규임용·채용 시

업 무 소 개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자문 ▪ 세무조정, 세무자문 및 Outsourcing ▪ 외국/외투기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경리, 급여, 총무,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 ▪ 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 및 청산자문 ▪ 국제조세, 이전가격 자문 ▪ 조직, 인사 전략 / HR ▪ 전략수립 및 균형성과관리/평가 /BSC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지역 및 관광개발 컨설팅 ▪ 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유치 자문 ▪ M&A, IPO자문, 자산부채 실사, 주식평가 ▪ IFRS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 ▪ 재무 및 경영리스크 분석, 관리, 경영일반 자문 ▪ 경영계획 및 시뮬레이션 / BSP ▪ 정보화계획/ ISP / IT Consulting ▪ PI / CRM / Risk Management 등 |
|--|---|

문의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3층, 5~8층, 10층 (우편번호 06179)
 TEL: (02) 316-6646, FAX: (02) 775-5885, E-mail: secretary@crowehorwath.co.kr

발행인

한울회계법인

* * * * *

한울회계법인(Hanul Choongjung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 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nul Choongjung LLC is a member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a Swiss association. Each member firm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Hanul Choongjung LLC and its affiliates are not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acts or omissions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or any other member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and specifically disclaim any and all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cts or omissions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or any other Crowe Horwath International member.